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정 2020.11.19.

개정 2021.10.19.

개정 2023.06.27.

기금관리팀(T.02-769-411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관리·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단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② 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③ 공단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④ 공단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 기업과 관

련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함]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자산운용지침」,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이 지침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개정 2023.06.27.>

⑥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실재하거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3장 의결권 행사
2. 제4장 중점관리 기업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3. ESG 등 비재무적 위험 또는 기회 요인 점검
4. 제5장 손해배상
5. 그 밖에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사결정 주체 등)** ①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른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단 내 담당부서에서 이행한다.

②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위탁운용사, 자문기관, 증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2장 수탁자책임위원회

**제6조(기능 및 심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기능 및 심의 사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운용규정」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3.06.27.>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의결권 행사

**제9조(의결권 행사대상)**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행사의 기본원칙)** ① 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
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대
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의사표시

가. 중립 : 전체 주식 수에서 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수가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나. 기권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한 후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안별 세부기준)** ① 주주총회 의안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이 적정한지를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제12조(행사의 위임)**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위탁운용사, 주식발행 회사 및 다른 주주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

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위임장은 별지 1호 서식 또는 위임하고자 하는 기관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10조제1항 따른 공단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장 중점관리 기업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제13조(기본방향)** 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상기업과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공단은 비재무적 요소 점검으로 기업 가치에 중대한 우려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신 교환 등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시행하고, 대상기업의 태도나 문제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중점관리 기업 선정 및 공개,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제14조(중점관리 사안)** ① 대상기업의 중점관리 사안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가치 보호 및 수익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3. 지속적인 반대행사에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4. 기업의 법령 위반행위

② 공단은 제1항에서 정한 중점관리 사안 이외에 ESG 등과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제15조(비공개 대화)** ① 공단은 보유지분율이 1% 이상 또는 보유비중이 0.5% 이상인 기업 중 제14조에 따른 중점관리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비공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비공개 대화는 이사회 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의 면담, 비공개 서한(질의서, 의견서) 발송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화를 거부하거나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11조 별표 1의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의 선정)** ① 공단은 제15조에 따른 비공개 대화를 1년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은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즉시 선정할 수 있다.

③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을 준

용한다.

**제17조(공개 중점관리 기업의 선정)** ① 공단은 제16조에 따른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이 선정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전의 경우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비공개 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 여지가 없는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은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즉시 선정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비공개 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 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공개서한)**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공개 중점관리 기업에 대하여 공개서한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면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주주제안)** 공단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공개 중점관리 기업에 대해서 제14조에서 정한 중점관리 사안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5장 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 청구)** 공단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임직원의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주주 대표소송)** ①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이 이사 등의 원인으로 손해를 입었음에도 배상청구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주대표 소송의 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호부터 4호에 따른 제소요건, 승소가능성, 소송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

2. 이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기업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되었는지 여부

3.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한 손해액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 여부

4.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제소의 실익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제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공동소송 참가)**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할 경우에는 제21조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효과를 고려하여 다른 주주가 제기하려는 소송에 공동소송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소송 의뢰)** 공단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소송의 제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 및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주관부서에 소송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7.>

## 제6장 보 칙

**제24조(공시 및 제출)** ① 공단은 제4조에서 정한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은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안별 세부기준 및 의결권행사 세부내용
2. 제17조에 따른 공개 중점관리 기업명단
3. 제18조에 따른 공개서한
4. 제23조에 따른 소송제기 내용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 대상이 발생한 때에는 「경영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결정일(제1항제1호의 사항은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 종류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7.>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권행사 세부내용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19.)

**제25조(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① 공단은 의결권행사, 주주관여활동, 관련 통계 등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연 단위로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와 자산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6조(내부통제)** 공단의 준법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이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보관)**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내부 절차와 이행 내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역량강화)** 공단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와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지침검토)** 공단은 이 지침을 매년 검토하여 자산운용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검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부 칙 (2020.11.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지침 제정에 따라 『자금운용규칙』 제24조에 따른 『주식의결권 행사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2021. 10. 19.)

이 지침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6. 27.)

이 지침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식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행사
I.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1. 재무제표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이 아닌 경우</li> </ul>	반대
2. 배당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동종업계 배당 수준, 자사주 매입규모, 경영진에 대한 보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li> </ul>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배당에 대해 회사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li> </ul>	사안별 검토
II. 정관 변경		
II-1. 주주권리 및 주주총회		
3. 주주총회 결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 변경 등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경우</li> </ul>	반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회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찬성
4.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없이 줄이는 경우</li> </ul>	반대
5. 의결주체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총회 결의 사안을 이사회 결의 사안으로 변경하는 안이 회사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li> </ul>	반대
6.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경우</li> </ul>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li> </ul>	찬성
7.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의 방식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의 방식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li> </ul>	반대
8. 일괄 상정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개별 안건 모두에 찬성</li> </ul>	찬성

구분	세부기준	행사
	하는 경우	
	■ 일부 안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반대
9. 회사명 변경	■ 명칭 변경으로 인한 인지도 하락 등으로 회사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대
10. 회계연도 변경	■ 잦은 회계연도 변경이나 주주총회를 연기하려는 목적 등 주주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반대
II-2. 이사회 및 감사기구		
	■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의 경우	사안별 검토
11. 이사회 규모	■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이 제약될 정도로 이사의 수를 줄이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이 줄어들 정도로 이사의 수를 늘리는 경우	반대
	■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경우	찬성
12. 사외이사의 비중	■ 정당한 사유없이 사외이사 비중을 낮추는 경우	반대
	■ 대표이사(CEO)와 이사회 의장의 직을 분리하는 경우	찬성
13.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경우	반대 (원칙)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안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찬성
14. 상무담당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 최고재무책임자(CFO)나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회사의 상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찬성
15. 선임사외이사의 도입	■ 대표이사(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에 선임 사외이사(lead director)를 도입하는 경우	찬성
	■ 시차임기제 폐지의 경우	찬성
16. 시차임기제	■ 시차임기제 도입의 경우	반대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안별 검토
17. 사외이사의 임기	■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경우	반대 (원칙)

구분	세부기준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li> </ul>	찬성
18. 이사후보추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의 추천절차(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경우</li> </ul>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경우</li> </ul>	찬성
19. 이사 후보 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이사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후보를 일괄 상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li> </ul>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li> </ul>	찬성
20. 집중투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li> </ul>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회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할 경우</li> </ul>	사안별 검토
21. 감사위원회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li> </ul>	반대
22. 감사위원회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사유없이 낮추는 경우</li> </ul>	반대
23. 외부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이외의 경영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li> </ul>	찬성
II-3. 이사 및 경영진 보상		
24. 이사 및 경영진 보상위원회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된 보상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li> </ul>	반대
25. 이사 및 경영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경우</li> </ul>	찬성

구분	세부기준	행사
보상위원회의 구성		
26. 이사 및 경영진 성과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경우</li> <li>■ 경영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 체계의 경우</li> </ul>	찬성 반대
27. 이사 및 경영진 주식 보상	■ 이사의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찬성
	■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이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찬성 (원칙)
	■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경우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	반대
	■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반대
	■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찬성
28. 불법적인 성과연동형 보상 환수	■ 임직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 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경우	찬성
Ⅲ.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29. 이사의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규 위반으로 법령상 결격사유에 준하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li> <li>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li> <li>3. 회사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li> </ol> </li> </ul>	반대 (원칙)
30. 사외이사의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 후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li> <li>2. 당해회사나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특수관계인이거나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경우</li> <li>3. 당해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거래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혹은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li> </ol> </li> </ul>	반대

구분	세부기준	행사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4. 당해회사에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연속 재임하는 연수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5.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연간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31. 감사(위원)의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사유를 준용</li> </ul>	
IV.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32. 이사 보수 한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가 제시하는 보수한도의 경우</li> </ul>	찬성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규모, 이사회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li> </ul>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li> </ul>	사안별 검토
33. 감사 보수 한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을 준용</li> </ul>	
V. 기타 안건		
V-1. 기업구조조정		
34. 인수·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대금의 적정성, 관련 정보의 공시 수준, 주가 흐름 등 시장의 반응, 사업상의 시너지 효과,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절차의 적정성 및 법적 위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li> </ul>	반대 혹은 기권
35. 영업 및 자산양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 공정성, 기업에 미치는 효과, 이해상충, 매각 대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경우</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경영권 방어나 승계를 목적으로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의 매각에 대한 경우</li> </ul>	반대
36. 분할 및 분할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합병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권 방어나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분할·분할합병의 경우</li> </ul>	반대



구분	세부기준	행사
V -2. 자본구조		
37. 자본 증가	■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반대 (원칙)
	■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이 자본금 증가의 목적이 합리적인 경우	찬성
38. 자본 감소	■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	반대 (원칙)
	■ 자본금 감소의 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3.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찬성
39. 주식의 분할 및 병합	■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병합)의 경우	찬성
	■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의 경우	반대 (원칙)
	■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 안이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는 경우	찬성
40. 신주인수권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경우	반대 (원칙)
	■ 다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의 근거, 목적, 범위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찬성 가능
41. 채무재조정	■ 채무재조정의 목적으로 보통주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안이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정도, 제안 조건, 채무 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	찬성
42. 증권의 전환	■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	찬성
43. 종류주식 발행	■ 종류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하려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가 명백하고 여타 조건들이 합리적인 경우	찬성

구분	세부기준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이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일 경우</li> </ul>	반대
44. 자기주식의 매입을 위한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주식의 매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부를 해주는 경우</li> </ul>	반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주식의 매입을 위해 임직원에게 대부를 해주는 안이 우리사주조합 등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li> </ul>	찬성
45.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경우</li> </ul>	반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상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이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정도,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가액, 재무 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li> </ul>	찬성
46. 주식의 제3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li> </ul>	반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찬성
47.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의 경우</li> </ul>	사안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반대
V-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48.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한 경영성과 달성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li> <li>2. 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 주식연계보상 전체 물량이 총 발행주식 수의 3% 미만인 경우</li> </ol> </li> </ul>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주주 동의 없이 행사가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li> </ul>	반대
49. 주식매수선택권의 성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을 성과와 연계하되, 주가 지수 등과 연계시켜 시장적 요인을 배제하는 경우</li> </ul>	찬성
5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ul>	반대

구분	세부기준	행사
	1. 사후적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2. 사전에 계약조건으로 조정을 허용하는 경우 3. 기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단, 증자 및 소각 등으로 주식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찬성
V-4. 임원퇴직금규정 개정		
51. 퇴직금지급규정 승인	■ 퇴직금지급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과거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	반대
52.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 이사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 이사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안에 회사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반대 (원칙)  찬성
53. 사외이사의 퇴직혜택	■ 사외이사에게 퇴직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반대
54.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주주총회 5영업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 (원칙)

[별표 2]

**중점관리사안 선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b>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b>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b>2.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b>
보수금액, 기업의 경영성과 등과 연계되지 않은 이사보수한도를 제안하여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b>3. 지속적인 반대행사에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b>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중 공단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b>4. 기업의 법령 위반행위</b>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① 해당 회사와 관련된 횡령 또는 배임 행위 ②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